

## 공 동 소 송 참 가 신 청 서

사 건 2000가합00 주주총회결의취소

원 고 ○○○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원고공동소송참가인 ◎◎◎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주식회사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대표이사 〇〇〇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은 다음과 같이 원고의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합니다.

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의 20○○. ○. ○. .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감사 ◇◇◇의 선임 결의를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 참가이유 및 청구원인

- 1.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은 피고회사의 주주인바, 청구취지 기재 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것임은 이 사건 소장 기재 청구원인과 같습니다.
- 2. 그렇다면, 위 총회에서 한 감사 ◇◇◇의 선임 결의는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,

이 사건 판결의 효력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것이어서(상법 건물 제2항, 제190조 본문), 이 사건의 소송목적은 원고와 원고공동소송참가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,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은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
## 첨 부 서 류

- 1.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 2통
- 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원고공동소송참가인 ◎◎◎ (서명 또는 날인)

n =	וא וער ד		-1 -1 -1 -7		₩₩₩.Klac.or
제 a	물 법 원	피참가소송의 계속법원	관 련 법 규	민사소송법 제833	<u>س</u> مسر
제출	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원·피고수만큼의 부본 제출				
불년	복절차 · 항소 및 상고(민사소송법 제390조~제438조)				
및	기간	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, 제425조)			
固	용	· 인지액 : ㅇㅇㅇ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			
"		·송달료 : ㅇㅇㅇ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	
7]	타	· 피고측으로 공동소송 참가하는 경우에는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함			
		·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			
		있음(민사소송법 제83조 제2항, 제72조 제3항)	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당사자 >> 소송참가